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제3항관련)

1.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구 분	과 태 료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 1.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과태료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9조제1호 법 제99조제2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